

[별지 제8호 서식]

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				
업체 정보	업체명		법인등록번호	
	부 문		업종 (대표업종)	
	주 소			
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유형 및 사유				
지정 취소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·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을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사업장·일부 시설의 양도 등으로 해당 사업장을 미보유할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발적참여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정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산 등으로 계획기간 중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가동중지·정지·폐쇄·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,000 tCO ₂ -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			
지정 취소 사유				
<p>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사를 할당대상업체로의 지정을 취소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	